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목차

1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	3p
2	발급 기준 및 관련 사항	6p
3	신청 절차 안내	10p
4	취약계층 증빙서류 검토 방법	25p
5	질문과 답변	49p

1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

3p

- 1. 추진 배경 ----- 4p
- 2. 개정 내용 및 기대 효과 ----- 5p

추진 배경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확대(2천만⇒5천만 원) 및 2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1억원으로 확대
 - *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견적서 제출
- 취약계층 고용을 증대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방지 등 건전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을 일정비율(30%) 이상 고용한 기업에 한하여 확대 적용

※ 수의계약 금액확대 대상

구분	기존	변경
기업 또는 조합	①여성기업, ②장애인기업	①여성기업, ②장애인기업 ③ 사회적기업 , ④ 사회적협동조합 , ⑤ 자활기업 , ⑥ 마을기업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30%)을 충족하는 기업

< 관련법령 등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30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3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8-4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3])」, 「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의계약 관련 취약계층 고용률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3649, 2018.07.27)」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활기업(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마을기업(광역자치단체)

개정 내용 및 기대 효과

1 수의계약 확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2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에 해당
-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 취약계층 30% 이상 참여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기준 산정

3 기대 효과

-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제고

2

판단기준 및 관련 사항

6p

- 1. 주요 판단기준 ----- 7p
- 2. 관련 사항 ----- 8p

발급 기준

1 주요 판단기준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_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발급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취약계층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100		
유급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발급신청(2025.06.01.)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근로자 인정	2024.12.04.	180
유급근로자 불인정	2024.12.05.	179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기타(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여성가장, 난민,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자 등)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가능 		

발급 기준

1 주요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지침 에 따름
 -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 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한 이후 '저소득자' 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급근로자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별표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상, '유급근로자 기준' 적용
 - * 근로기준법 14조 - 근로자의 개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자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
- **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공휴일 제외)
 - * 민원처리에 관한 법과 진흥원 「민원사무처리규칙」 준용

관련 사항

2 관련 사항

- 제출 후 취약계층 검증과정에서 기업이 신청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의 고용비율이 상이 할 수 있음
- 신청 후 검토과정에서 취약계층 근로자가 신청시점과 다를 수 있으니 관련 서류 확인에 유의
- '고용보험체크' 클릭 시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한 자동확인 사항으로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오기 없이 등록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근로자 모두 등록(유급근로자명부와 동일하게 스캔)
- 모든 첨부 서류는 반드시 PDF파일로 변환 후 등록, 파일 용량 준수(50메가 이하)
- 검토 결과(발급승인, 보완요청 등) 수신 가능한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록 및 수신 동의하여야 알림 가능(자동 알림)

3

신청 절차 안내

10p

- 1. 발급 절차 ----- 11p
- 2. 신청 화면 안내 ----- 12p

발급 절차

단계	수행방법	비고
발급신청·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온라인), 유급 근로자명부(온라인) 및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유급근로자 전체) 	신청기업 → 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 사회적기업 포털(로그인) → 통합사업관리시스템(클릭) → 취약계층고용비율점검신청(클릭) → 확인서신청(클릭)	
신청서 검토 (통합사업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 가입여부(서류 검토) 취약계층 검증(관련 증빙서류 검토) 	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 검토 소요기간: 15일 이내이며, 신청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신청 결과 통보 (SMS, 이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SMS, 이메일 결과 통보 	진흥원 → 신청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발급 (통합사업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80일 유효기간을 가짐 	신청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속 방법(로그인)

1  **사회적기업 포털**

2  **로그인**  회원가입

정책소개 현황·성과 사업신청 소식·자료 고객센터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안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일정

강원 3.14.(금)~4.4.(금) / 설명회 3.21.(금) 13시 @소셜캠퍼스 온 강원

서울 3.21.(금)~4.10.(목) / 설명회 4.3.(목) 14시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로그인

회원 유형을 선택하세요.

3 기업 개인

4

ID/PW

 아이디

 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아이디 저장 비밀번호 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 찾기 | 비밀번호 찾기

간편인증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PASS


드림인증


국민인증서


토스


신한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뱅크샐러드


하나인증서

기업공동인증서



사회적기업 포털 Copyright©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All Contents Reserve

공무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관리자 로그인-진흥원)

- ① [사회적기업 포털] 접속
www.seis.or.kr
- ② 화면 상단 [로그인] 클릭
- ③ 회원유형 [기업] 선택
- ④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
[로그인] 클릭

12

접속 방법(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화면 접속 (통합사업관리시스템)

①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사회적기업 포털' (Social Enterprise Portal).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links: '정책소개', '현황·성과', '사업신청', '소식·자료', and '고객센터'. A search icon and a menu icon are also present. The main banner features the text '신규 시스템 오류 및 불편사항 접수' (New System Error and Inconvenience Report) and a sub-header '오류 접수' (Error Report) on a tablet graphic. Below the banner, a navigation path is provided: '접수처 : 로그인 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시스템관리 > 운영관리 > 운영유지관리개선요청 등록'. At the bottom, a row of service icons is displayed, with the first icon,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Integrated Business Management System),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red circle containing the number '1'.

접속 방법(화면 경로)

화면 접속 (확인서 관리)

- ① [취약계층고용비율점검] 클릭
 - ② [취약계층고용비율점검신청] → [확인서신청] 클릭
 - ③ [신규] 클릭
- [신규] : 확인서 데이터를 새로 생성하는 버튼
 - [신청] : 진행상태가 [임시서장]인 건에 대하여[신청]상태로 전환
 - [확인서 발급] : 진행상태 '완료'인 건에 대해 확인서 출력 또는 PDF 저장할 수 있는 버튼
 - [엑셀다운] : 현재 화면의 그리드에 보이는 정보 다운로드

확인서신청

breadcrumb: 취약계층고용비율점검 > 취약계층고용비율점검신청 > 확인서신청

신청년도: 전체 | 진행사항: 선택

신청 목록 [총 0건]

순번	진행상태	기업명	대표자	발급자수	신청일	발급일	유효기간	발급번호	전체 유급근로자 수	취약계층 근로자 수	취약계층 고용비율
조회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급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취약계층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X 100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예) 발급신청(2018.07.20)

구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근로자 인정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경쟁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기타

화면 안내

화면 안내 (화면 버튼 기능)

- ① [발급기준] 확인 및 [신청서], [유급근로자명부]작성 [취약계층 고용비용]확인및제출
- **[신청]** : [임시저장] 된 건을 신청 상태로 변환 할 수 있는 버튼
- **[임시저장]** : [신청서], [유급근로자 명부], [검토 및 승인] 탭을 수정 및 저장하는 버튼
- **[삭제]** : 임시저장인 건에 대해 삭제하는 버튼
- **[확인서 발급]** : [검토완료] 후 진행상태가 [발급완료]된 건에 대해 발급하는 버튼

✓ 발급기준
신청서
유급근로자 명부
취약계층 고용비용

☰ 발급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용이 30% 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취약계층고용비용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X 100			
근로자 인정 기준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예) 발급신청(2018.07.20)		
		구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기타		
기타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취약계층 판단기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바로가기
- 이 외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바로가기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
- 발급일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690호, 2022.6.14.) 및「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33호, 2020.12.28.) 개정-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733호, 2022.6.28.)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용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 개정-시행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649(2018.07.27)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의계약 관련 취약계층 고용률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 신청
임시저장
삭제
확인서발급

신청서(신청서 작성)

신청서 탭 (신청서 작성)

① [신청서] 탭 클릭

② [신청서] 내 입력 정보 확인

* [신청인] : 신청자가 작성하는 이름

* [사용용도] : [행정기관제출용]의 고정값 선택, 확인서 발급 시 보이는 정보

* [결과 수신 휴대폰번호], [결과 수신 이메일] : 수신 동의한 연락처로 신청, 보완요청, 발급 등 문자 및 메일 발송

③ [보완요청] : 보완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보이는 칸으로 입력화면 아님

발급기준

✓ 신청서

유급근로자 명부
취약계층 고용비용

① ▶ **보완요청** ① 확인서 신청 후 검토단계에서 보완사항이 있을때 안내하는 칸입니다.

② ▶ **취약계층 고용비용 확인서 신청서** ①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및 신청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일자(자동생성)		* 신청인		* 사용용도	선택 <input type="radio"/> 계약 <input type="radio"/> 기타 / <input type="radio"/> 중앙부처 <input type="radio"/> 광역·기초자치단체 <input type="radio"/> 공공기관
결과 수신 휴대폰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SMS 수신 동의	결과 수신 이메일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E-MAIL 수신 동의

③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첨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다운"/>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삭제"/> <input type="button" value="PDF 보기"/>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첨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다운"/>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삭제"/> <input type="button" value="PDF 보기"/>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 사회적기업 분점+지점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첨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다운"/>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삭제"/> <input type="button" value="PDF 보기"/>

④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유급근로자 전체) ***

☐	상태	순번	파일명	확장자	크기	등록일
파일 목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제출서류 등록)

신청서 (제출서류 등록)

① [제출서류] 제출서류 등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신 자료 제출, 변경된 경우 반영된 서류 첨부(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정보의 서류 제출(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

※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기업정보 수정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하여 처리 된 후 확인서 신청)

발급기준

✓ 신청서

유급근로자 명부

취약계층 고용비용

보완요청 ① 확인서 신청 후 검토단계에서 보완사항이 있을때 안내하는 칸입니다.

취약계층 고용비용 확인서 신청서 ①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및 신청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일자(자동생성)		* 신청인		* 사용용도	선택 <input type="radio"/> 계약 <input type="radio"/> 기타 / <input type="radio"/> 중앙부처 <input type="radio"/> 광역·기초자치단체 <input type="radio"/> 공공기관
결과 수신 휴대폰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SMS 수신 동의	결과 수신 이메일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E-MAIL 수신 동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첨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다운"/>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삭제"/>	<input type="button" value="PDF 보기"/>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첨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다운"/>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삭제"/>	<input type="button" value="PDF 보기"/>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 사회적기업 분점+지점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첨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다운"/>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삭제"/>	<input type="button" value="PDF 보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유급근로자 전체) *

<input type="checkbox"/>	상태	순번	파일명	확장자	크기	등록일
파일 목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청서(제출서류 등록)

신청서 (제출서류 등록)

② [제출서류] 제출서류 등록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본점+지점)]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확인을 위한 서류로 [유급근로자 명부]탭에 작성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유급근로자전체)] : [유급근로자 명부]탭의 제출 인원과 동의서를 동일하게 제출 (사회적기업용 동의서 서식으로 제출(유급근로자 작성 인원 수 맞추어 제출, 동의 여부 모두 V표기))

발급기준
✓ 신청서
유급근로자 명부
취약계층 고용비용

보완요청 ① 확인서 신청 후 검토단계에서 보완사항이 있을때 안내하는 칸입니다.

취약계층 고용비용 확인서 신청서 ①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및 신청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일자(자동생성)	<input type="text"/>	* 신청인	<input type="text"/>	* 사용용도	선택 <input type="checkbox"/> 계약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중앙부처 <input type="checkbox"/> 광역·기초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결과 수신 휴대폰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SMS 수신 동의		결과 수신 이메일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E-MAIL 수신 동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input type="text"/>	파일첨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다운"/>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삭제"/> <input type="button" value="PDF 보기"/>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input type="text"/>	파일첨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다운"/>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삭제"/> <input type="button" value="PDF 보기"/>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 사회적기업 본점+지점	<input type="text"/>	파일첨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다운"/>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삭제"/> <input type="button" value="PDF 보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유급근로자 전체) *

<input type="checkbox"/>	상태	순번	파일명	확장자	크기	등록일
파일 목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급근로자 명부(화면 및 버튼 안내)

유급근로자 명부 (화면 및 버튼 안내)

- ① [유급근로자 명부] 탭 클릭
- ② 근로자 인정 기준, 유의사항 안내
- ③ [유급근로자 명부] : [검토 및 승인] 탭에 동일 내용 확인 가능, 취약계층 수정 시 명부탭에서 수정 후 [자정]클릭
 - [고용보험체크] : 유급근로자 해당 여부 영역(기업명, 취득상실일)확인
 - [행추가] : 유급근로자 추가 버튼
 - [행삭제] : 유급근로자 삭제 버튼
 - [엑셀업로드] : 유급근로자를 엑셀로 한번에 추가하는 버튼

발급기준
신청서 **1**
유급근로자 명부
취약계층 고용비용

보완요청 **1** 확인서 신청 후 검토단계에서 보완사항이 있을때 안내하는 칸입니다.

유급근로자 인정 기준

- * 고용보험 가입 유급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유급근로자는 유급근로자로 미 인정)
- * 고용보험 가입일(취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근로자

취약계층 인정 기준

- * 인증지침 준용 (취약계층 관련 서류는 행정기관 발행 기준 입사입 또는 예비지정 및 고용부 인증 당시 서류)

유급근로자 입력 시 유의사항

- *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자동으로 선택됩니다.(예: 홍길동(저소득자+만55세 이상) → 고령자)
- * 총 근로자 수(고용보험조회)와 유급근로자 수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1** 첨부파일은 50MB 이하의 파일만 가능합니다.

유급근로자 명부 [총 0건] **1** 주민등록번호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하여 수집 처리함

고용보험체크
행추가
행삭제
엑셀업로드

순번	* 근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취약계층유형	취약계층 제출서류	유급근로자 해당여부			* 입사일자	유급근로자 해당...		* 주 근로시간	* 월 임금액 (원)	* 고용형태	* 직종
						기업명	취득일자	상실일자		고용보험체크	근로시간				
1	홍길동	000000-00000000	여 ▼	고령자 ▼	↑ X ↓		2024-05-02		2024-05-02	고용보험체크	15	1,000,000	무기계약직 근로자 ▼	사무직 ▼	
2	울이동	000000-00000000	남 ▼	장애인 ▼	↑ X ↓		2023-04-05		2023-04-05	고용보험체크	40	2,200,000	무기계약직 근로자 ▼	사무직 ▼	
3	김삼동	000000-00000000	남 ▼	일반인(비취약계층) ▼	↑ X ↓		2020-03-05		2020-03-05	고용보험체크	40	2,200,000	무기계약직 근로자 ▼	사무직 ▼	
4	나사동	000000-00000000	여 ▼	일반인(비취약계층) ▼	↑ X ↓		2023-09-13		2023-09-13	고용보험체크	40	2,400,000	무기계약직 근로자 ▼	단순노무직 ▼	
5	박사동	000000-00000000	남 ▼	일반인(비취약계층) ▼	↑ X ↓		2023-10-10		2023-10-10	고용보험체크	40	2,500,000	무기계약직 근로자 ▼	판매직 ▼	

◆ 유급근로자 해당여부 조회 시 현재일자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의 상실일 데이터만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입사저장
삭제
확인서발급

유급근로자 명부(엑셀 업로드)

유급근로자 명부 (엑셀 업로드)

※ [엑셀 업로드] 방법

- ① [엑셀 업로드] 클릭 → ② 팝업 화면에서 [샘플파일 다운로드] 클릭 → ③ 샘플 양식에 맞추어 작성 → ④ [파일 업로드] 클릭 (작성한 파일 업로드 및 업로드된 내용 확인 및 수정) → ⑤ [일괄 등록] 클릭 → ⑥ [유급근로자 명부] 탭에서 화면에 적용되었는지 확인 → ⑦ [고용보험체크] 버튼 클릭 → ⑧ 취약계층 근로자에 [취약계층 제출서류] 개인별 첨부 (고령자는 첨부X, PDF파일 첨부)

※ 엑셀 파일 등록 시 입력하지 않은 행이 인식되어 오류 나는 경우 해당 행 전체를 엑셀에서 삭제 후 업로드 또는 샘플파일에서 해당 열 제외 재작성

The image illustrates the process of uploading an Excel file for the '유급근로자 명부' (Paid Leave Worker List). It shows a file explorer window where the user selects the Excel file. The web application interface includes a '샘플파일 다운로드' (Download Sample File) button and an '엑셀파일 업로드' (Upload Excel File) button. A confirmation dialog box prompts the user to confirm the upload. The Excel spreadsheet contains a list of workers with columns for name, ID, gender, leave type, start date, duration, amount, status, and position. A warning message in the spreadsheet indicates that rows 1, 2, 3, and 4 are not recognized and should be deleted. The final step is clicking the '일괄 등록' (Batch Register) button.

유급근로자 명부(엑셀 업로드)

유급근로자 명부 (엑셀 업로드)

※ [엑셀 업로드] 방법

- ① [엑셀 업로드] 클릭 → ② 팝업 화면에서 [샘플파일 다운로드] 클릭 → ③ 샘플 양식에 맞추어 작성 → ④ [파일 업로드] 클릭 (작성한 파일 업로드 및 업로드된 내용 확인 및 수정) → ⑤ [일괄 등록] 클릭 → ⑥ [유급근로자 명부] 탭에서 화면에 적용되었는지 확인 → ⑦ [고용보험체크] 버튼 클릭 → ⑧ 취약계층 근로자에 [취약계층 제출서류] 개인별 첨부 (고령자는 첨부X, PDF파일 첨부)

※ 엑셀 파일 등록 시 입력하지 않은 행이 인식되어 오류 나는 경우 해당 행 전체를 엑셀에서 삭제 후 업로드 또는 샘플파일에서 해당 열 제외 재작성

The screenshot illustrates the application process for uploading an Excel file. It includes an Excel spreadsheet with employee data, a file download dialog box, and a data entry table with highlighted fields and buttons.

Excel Spreadsheet Data: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주 근로시간	월 임금액 (원)	고용형태	직종
홍길동	0234567890000	M	장애훈자	20210427	40	1000000	기간제근로자	관리자
김순이	9934567899999	F	고령자	20231122	40	2000000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문직
동길이	4402231354789	M	고령자	20221212	60	3000000	정규직	사무직
김은이	8802231355555	M	일반인(비취약계층)	20190101	60	3000000	정규직	전문직

Data Entry Table:

순번	근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취약계층유형	취약계층 제출서류	유급근로자 해당여부				입사일	주 근로시간	월 임금액 (원)	고용형태	직종
						기업명	취득일자	상실일자	고용보험체크					
1	홍길동	023456-7890000	남	장애훈자				고용보험체크	2021-04-27	40	1,000,000	기간제근로자	관리자	
2	김순이	993456-78999...	여	고령자				고용보험체크	2023-11-22	40	2,000,000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문직	
3	동길이	440223-1354789	남	고령자				고용보험체크	2022-12-12	60	3,000,000	정규직	사무직	
4	김은이	880223-1355555	남	일반인(비취약계층)				고용보험체크	2019-01-01	60	3,000,000	정규직	전문직	

유급근로자 명부(엑셀 업로드)

유급근로자 명부 (엑셀 업로드)

② 샘플파일 내 주요사항 안내

- [성명] : 문자 작성
- [주민등록번호] : 숫자만 작성
- [성별] : F(여자) 또는 M(남자) 영
어 대문자 작성(한글, 영어 소문자X)
- [취약계층 유형] : 숫자 코드 작성
(고령자이면서 다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 우선됨(만
55세이상)(사회서비스 대상 제외)
- [입사일] : 근로계약서 입사일자
숫자입력(날짜형식X)
- [주 근로시간(시간)] : 숫자 입력
- [월 임금액(원)] : 최근 임금 금액(
숫자만 입력, 천 단위 구분 기호X)
- [고용형태] : 기간제, 정규직, 무
기직 등 관련 코드 숫자만 입력
- [직종] : 관리자, 사무직 등 관련
코드 숫자만 입력

유급근로자_명부_샘플_데이터 [호환 모드] - Excel

성별, 취약계층유형, 고용형태, 직종은 반드시 코드로 입력해주세요. (- 제외하여 입력)

1, 2, 3, 4행의 내용은 지우지마세요. 5행부터 작성해주세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주 근로시간	월 임금액 (원)	고용형태	직종
홍길동	1234567890000	M	1003	20210427	40	1000000	1002	1001

취약계층 고용비율(검토 과정에서 변동되는 값)

취약계층 고용비율 (비율 확인)

① [취약계층 고용비율] 탭은 입력 화면이 아닌 조회 화면으로 검토과정에서 변동되는 값

② [취약계층 고용현황] : 기업이 제출한 유급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유급근로자수와 취약계층근로자수, 취약계층고용비율표기

※ '유급근로자 명부' 탭에서 근로자 별 '고용보험체크'를 클릭하더라도 비율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검토 및 발급 후 확인 가능

③ [취약계층 고용비율] 탭을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확인서신청 > 취약계층고용비율점검 > 취약계층고용비율점검신청 > 확인서신청

신청년도: 전체 | 진행사항: 선택

초기화 | 조회

신청 목록 [총 0건]

신규 | 신청 | 확인서발급 | 엑셀다운

순번	진행상태	기업명	대표자	발급처수	신청일	발급일	유효기간	발급번호	전체 유급근로자 수	취약계층 근로자 수	취약계층 고용비율
조회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급기준 | 신청서 | 유급근로자 명부 | **취약계층 고용비율**

취약계층 고용비율 ⓘ 신청 시점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검증후 고용비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고용현황	전체 유급근로자 수 (명)	취약계층 근로자 수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신청 | 임시저장 | 삭제 | 확인서발급

취약계층 고용비율(유급근로자 해당 여부 확인)

유급근로자 해당 여부(일자계산기 활용)

※ **[유급근로자 해당여부]** : 신청시점 기준 고용보험 180일 이상 지속 가입자 해당

(고용보험 180일 미만 → 유급근로자 미해당)

※ **[취약계층 충족여부]** : 신청시점 기준 고용보험 180일 이상 지속 가입자 중 서류 검토 결과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만 충족

(일반근로자, 취약계층이더라도 고용보험 180일 미만 → 취약계층 미충족)

기준일에 신청일자 입력
 * 보완 과정에서 신청일자 이후로 인원 계산하길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취득자명부를 재신청일자 기준으로 발급 및 첨부 받아서 일자 계산

기준일을 1일로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179]일 입력 및 [전]클릭

유급근로자에 해당하는 일자 결과값을 바탕으로 해당여부 및 충족여부 변경

4

취약계층 증빙서류 검토 방법

25p

0. 공통 -----	26p
1. 저소득자 -----	27p
2. 고령자 -----	32p
3. 장애인 -----	32p
4. 성매매 피해자 -----	33p
5.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34p
6. 북한이탈주민 -----	35p
7. 가정폭력 피해자 -----	35p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36p
9. 결혼이민자 -----	37p
10. 갱생보호 대상자 -----	38p
11. 범죄구조피해자 -----	39p
12. 기타 -----	40p

취약계층 검토 방법(공통)

※ 취약계층 확인 공통 사항

-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 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저소득자' 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 18.5.1 고용된 자가 '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증빙

· 일자리창출사업 승인 공문

○○○ 시

수신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사업 참여예정자 승인 통지

1. 귀사의 무공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이 승인 통지합니다.

회사명	(생년월일)	승인여부	승인일	비고
		승인		취약계층 (저소득자)

붙임 : 취약계층(저소득자) 검토 1부, 끝.

○○○ 시

주무관 지역공동체팀 일자리경제과
참조자 장

시행 일자리경제과 관수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 비공개(☎)

- * 신청기업과 일치 여부 확인
- *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승인된 공문인지 확인(타 지원사업X)

- * 근로자 성명 확인
- * 취약계층으로 승인된 근로자인지 확인(일반, 전문인력X)

취약계층 검토 방법(저소득자)

제1호. 저소득자(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증빙1

· 수급자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의 경우 발급 일자 확인(입사 및 예비·인증 당시 발급한 서류 인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외2서시] <개정 2015.4.20.>

제 호

수급자 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2. 세대주 성명(시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3. 주소(소재지):

4. 수급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보장시설 수급자

5.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 근로자 성명 확인

* 발급 일자 확인
(입사당시 발급 서류가 아닌 경우 사회복지급여 통지서 제출)

취약계층 검토 방법(저소득자)

제1호. 저소득자(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증빙2 ·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7.1> [1면]

사회보장급여 [결정(결합)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변경·정지·중지·상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고

연령구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본인			기초의료급여	-	0000.00.00 - 0000.00.00.
자녀				-	-

변경·정지·중지·상실

일자	년 월 일	내 용
변경 사유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입대취학·근로능력 변동 <input type="checkbox"/>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input type="checkbox"/>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기타()
정지 사유		<input type="checkbo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1항 또는 「치료집행법」 제 46조 제 1항에 수용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행정처분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input type="checkbox"/>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타()
중지 사유	2015년 07월 17일 부터	<input type="checkbox"/>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투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input type="checkbox"/>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input type="checkbox"/> 최근 6개월간 본인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이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자의 급여 요청 <input type="checkbox"/>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의료기관에 2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지급받은 임차료를 차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 기타(사업(자제)장르)
상실 사유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법 제3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 상실 <input type="checkbox"/> 국적상실 <input type="checkbox"/> 국외이주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의 변경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의례함 기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7.1> [2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오며, 상당할 일 있었을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기초생활보장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직할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포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 2) 연후고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5)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6)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 7)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실관리위원회 서면으로 행정실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거주지 등 사용자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어 바랍니다.

년 월 일

도 시장

시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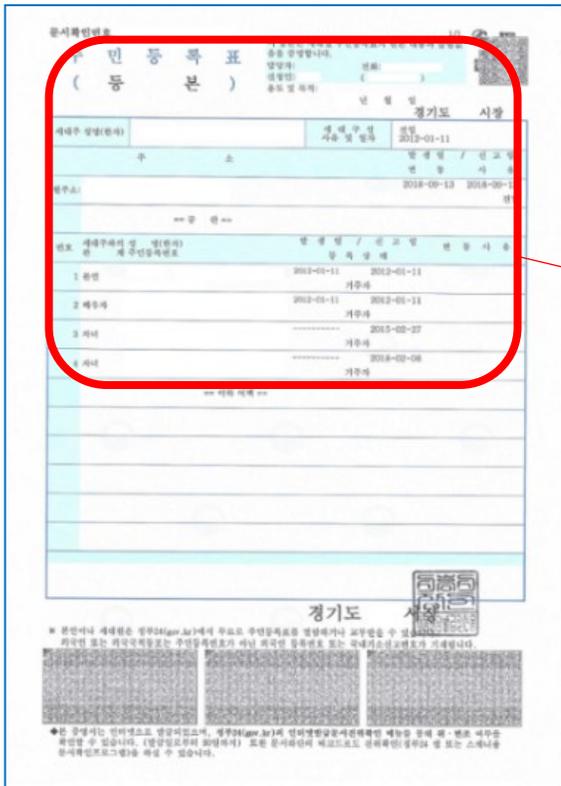
* 근로자 성명 확인
 * 보장급여 기간 내 사회적기업 입사일이 있는지 확인

취약계층 검토 방법(저소득자)

제1호. 저소득자(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증빙3 · 주민등록등본 + 등본에 있는 모든 자((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일용포함))

- ① [등본]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발생일, 변동사유, 세대주와의 관계가 보이도록 출력하여 제출
- * 주소변동(이동한 가족의 초본+이동없는 가족의 등본+가족관계증명서(형제 등 구성원 확인))



* 근로자 및 가구원 관계 및 개별 신고일 확인하여 입사(또는 인증)전 6개월간 같이 거주한 가구원 수 기준 소득 계산 (이사 등으로 주소 변동 있는 인원 초본 추가 보완)

주민등록표 (등본)

취약계층 검토 방법(저소득자)

제1호. 저소득자(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증빙3 · 주민등록등본 + 등본에 있는 모든 자((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일용포함))

②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등본에 기재된 가구원 모두 제출(사회적기업 입사 전 6개월 간 월평균소득 확인, 단순 동거인 제외)

* [소득금액증명 확인 기준] : 근로소득 →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 [본인소득내역 확인] 소득금액증명 발급 불가한 최근 소득 (최근 연도 2024년 이후 조회)

▷ 경로 : [국세청홈텍스→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일용·간이·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에서 본인 소득 총액 및 월별내역 조회 전체화면 캡처

* 최근 소득 중 홈텍스 조회 불가한 월은 해당기간 근로한 사업장에 요청하여 원천징수영수증 구비(서류 확인 중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직인), 이체확인내역 등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또는 입사 전 연도부터 현재 사업장 근로기간을 포함한 [소득금액증명] 제출

▷ 경로 : [국세청홈텍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

③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일용포함)] : 등본에 기재된 인원 모두 제출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조회되지 않는 최근 연도의 경우) 본인소득내역확인 화면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일용포함)

취약계층 검토 방법(저소득자)

제1호. 저소득자(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 평균 소득

[저소득자 기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

[단위: 원]

가구원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인	693,201	804,294	827,276	769,048	851,994	863,336	936,909	918,850	971,829
2인	1,287,859	1,396,156	1,449,387	1,452,657	1,511,991	1,603,685	1,704,470	1,830,250	1,912,919
3인	1,862,940	1,969,319	2,108,077	2,077,525	2,225,379	2,385,630	2,539,879	2,628,447	2,713,692
4인	2,088,667	2,280,311	2,403,657	2,366,367	2,517,348	2,749,099	2,937,952	2,994,801	3,065,884
5인 이상	2,244,481	2,395,613	2,540,647	2,585,637	2,826,444	2,856,503	2,976,492	3,018,893	3,311,600

[단위: 원]

가구원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인	1,029,487	1,043,277	1,006,626	1,053,954	1,132,674	1,433,656	1,594,629	1,718,386	1,669,741	1,764,623
2인	1,904,979	1,885,918	1,987,399	1,974,900	2,054,841	2,235,550	2,512,597	2,629,363	2,760,708	2,877,831
3인	2,771,118	2,834,764	2,913,278	3,086,764	3,153,183	3,415,986	3,716,509	3,834,291	3,935,712	4,421,164
4인	3,152,582	3,213,756	3,286,477	3,486,185	3,602,555	4,089,882	4,267,303	4,336,102	4,773,869	4,899,391
5인 이상	3,233,056	3,268,902	3,236,883	3,669,790	3,863,369	3,992,680	4,330,945	4,606,819	5,337,598	5,520,451

취약계층 검토 방법(성매매 피해자)

제4호. 성매매 피해자

증빙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성매매 피해자 :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취약계층 검토 방법(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제5호.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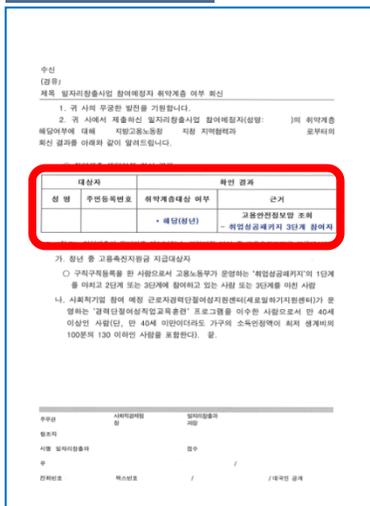
-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경력단절여성 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증빙1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내 1요건심사형 캡처 화면" (중위소득의 100의 60이하)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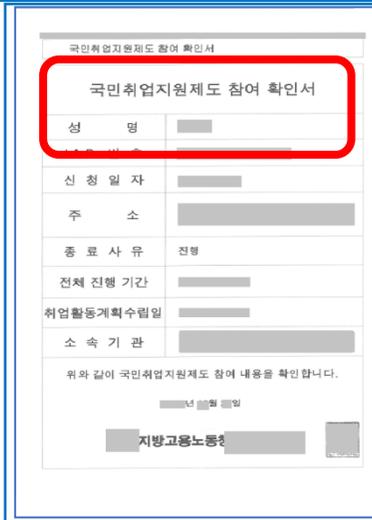
* 대상자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 중 I 유형 청년특례(중위소득120%이하)_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자 및 II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내 1요건심사형 캡처 화면 또는 지원제도 컨설팅기관에 참여자정보 시스템 캡처 요청하여 첨부_중위소득확인)

※ 구 확인 서류(청년경단녀 중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 : 2017년 하반기 입사자 _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확인서(1유형), 2017년 상반기까지 입사자_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확인서(1,2유형)

증빙2 ·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_수료증, 입사당시 만35세 이상_2024년부터 새로 확인하는 취약계층부터 적용, 기존 만40세에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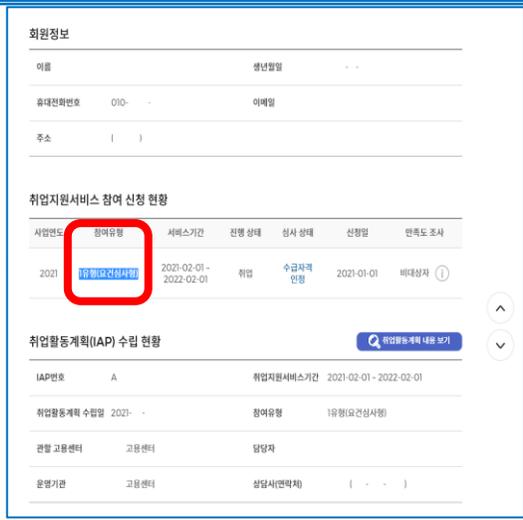


일자리창출사업 승인 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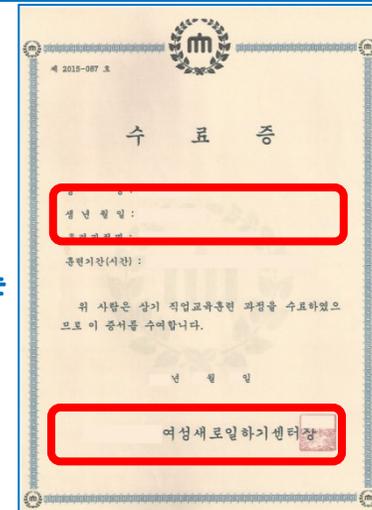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내 참여 정보 캡처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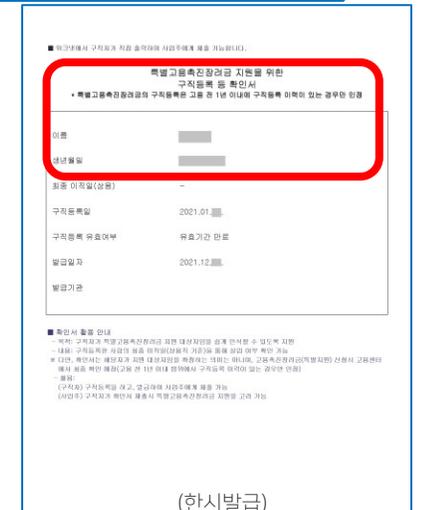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직업교육훈련 수료증(만35세이상) 직업교육훈련 2개월 이상 + '구직등록 또는 실업기간 3개월 이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직업교육훈련 수료증(만35세이상) 직업교육훈련 2개월 이상 + '구직등록 또는 실업기간 3개월 이상'



(한시발급) 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원을위한 구직등록확인서

취약계층 검토 방법(북한이탈주민, 가족폭력 피해자)

제6호. 북한이탈주민

증빙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발급처: 민원24(www.minwon.go.kr) 혹은 방문신청(각 시군구, 통일부, 각 시도)

· 발급절차: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 해외남북교류; 새터민지원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 ⇒ 민원 신청하기 ⇒ 공인인증서 확인 후 문서출력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입국일	입국일	입국일	입국일
보호종류	보호종류	보호종류	보호종류

상기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통일부장관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증빙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 가정폭력 피해자 정의: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취약계층 검토 방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증빙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

문서확인번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서식)

한부모가족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3.

4. 제출용도: (용도) (제출처)

5. 선정일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시·군·자치단체장인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화단의 마이크로도 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를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검토 방법(결혼이민자)

제9호.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증빙1 · 국적 취득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_취득전 국적)+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증빙2 · 국적 미취득 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결혼 이민) 또는 **외국인등록증(F-2, F-5, F-6)**

국적 취득자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미취득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영주 자격 확인

외국인등록증

취약계층 검토 방법(갱생보호 대상자)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증빙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갱생보호 대상자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		
참여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참가기간	~
담당직원 현황	직원명	
	연락처	

(사후관리(취업자) 단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기관 제출용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

* 관련 기관 확인

취약계층 검토 방법(범죄구조피해자)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증빙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 범죄구조피해자 :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본다.

•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0.2.>

결정통지서

신청인	성명
	주소

년 월 일 귀하가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결정일시	년 월 일
결정주문	<input type="checkbox"/>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한다. <input type="checkbox"/>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input type="checkbox"/> 구조금 월을 지급한다.
이유	

년 월 일

00지방경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장 직인

취약계층 검토 방법(기타)

제12호. 기타

증빙 · 구분 별 증빙 상이

페이지	기타 항목(11종)		증빙
55p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비교하여 취득이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
56p	나.	수형자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확인서(노역유치자 제외)
-	다.	소년원생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확인서
-	라.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57p	마.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58p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관계기관 사실확인서(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59p	아.	여성가장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 였던 자 의 직계존비속(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 였던 자 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확인서, 교도소 수용확인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혼인관계증명서), 통·반장의확인서등)
60p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난민인정증명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61p	차.	자립준비청년 (만18세이후보호종료된아동중만 34세이하인자)	보호종료확인서(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62p	카.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등(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청소년)

취약계층 검토 방법(기타_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제12호. 기타 ▶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증빙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 **구직등록 기록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구직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보험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 해당)
- 구직등록기록: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기록(구직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실업상태)

예) 2019.01.01 고용보험 상실 및 2023.01.01 사회적기업 고용보험 취득 → 2019.01.01~2022.12.31 기간 중 구직등록 기록 확인 서류 필요

* 고용보험이력표기,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상실일 확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에서 발급)

+

워크넷 구직신청 내역

구직등록 확인증

취약계층 검토 방법(기타_수형자)

제12호. 기타 ▶ 나. 수형자

증빙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수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The form is titled '출소증명서' (Release Certificate). It contains the following fields:

-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Redacted]
- 용도: 사실확인용 (Purpose: Fact Confirmation)
- 성명 (Name): [Redacted] 생년월일 (Date of Birth): [Redacted]
- 주소 (Address): [Redacted]
- 수용기관 (Institution): [Redacted] 교도소 (Prison)
- 구속일자 (Arrest Date): [Redacted]
- 입소일자 (Admission Date): 20[Redacted]년 [Redacted]월 [Redacted]일
- 형 확정일 (Sentence Determination Date): 20[Redacted]년 [Redacted]월 [Redacted]일
- 출소일자 (예정일자) (Release Date (Estimated Date)): 2023년 [Redacted]월 [Redacted]일
- 출소사유 (Cause of Release): 가석방 (Parole) 2022년 [Redacted]월 [Redacted]일
- 용사항 (Remarks): [Redacted]
- 위사실을 증명합니다. (I certify that the above facts are true.)
- 년 월 일 (Year, Month, Day): [Redacted]년 [Redacted]월 [Redacted]일
- 교도소장 (Prison Warden): [Redacted]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

* 출소일자 확인(입사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확인)

* 관련 발급 기관 확인

취약계층 검토 방법(기타_노숙인)

제12호. 기타 ▶ 마. 노숙인

증빙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추천자	추천인		직위	전화번호	
	주소			FAX	
					e-mail
추천서 용					
상기와 같은 인원을 인력으로 추천합니다.					
추천기관: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

* 관련 발급 기관 확인

취약계층 검토 방법(기타_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제12호. 기타 ▶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증빙

·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증빙 서류 : 병원 진단서 또는 국가기관 확인 서류(질환명 및 질병 코드 확인)
- 확인 방법 :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 접속 → 희귀질환정보 검색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병명 확인**

병역판정심사결과와 통보서

*** 희귀질환명 검색**

병원 진단서 또는 국가기관 확인 서류(질환명 및 질병 코드 확인)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 접속 → 희귀질환정보 검색

취약계층 검토 방법(기타_ 여성가장)

제12호. 기타 ▶ 아. 여성가장(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

증빙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 ①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②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③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확인서, 교도소 수용확인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혼인관계증명서), 통·반장의확인서등)

주민등록표 (등본) form showing household registration details. Red boxes highlight the spouse and dependent information.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form showing marriage details. Red boxes highlight the spouse and dependent information.

가족관계증명서 form showing family relationship details. Red boxes highlight the spouse and dependent information.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form showing detailed family relationship information. Red boxes highlight the spouse and dependent information.

등본(직계존비속 만60세 이상 또는 만18세 미만 생년월일 및 거주) 확인

혼인관계(배우자였던 자) 확인

혼인관계(배우자였던 자 및 직계존비속) 확인

취약계층 검토 방법(기타_난민)

제12호. 기타 ▶ 자. 난민

증빙

· 난민인정증명서

▶ 난민 :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

* 관련 발급 기관 확인

취약계층 검토 방법(기타_보호종료아동)

제12호. 기타 ▶ 차. 자립준비청년

증빙

· 보호종료확인서(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보호종결확인서			
기관담당자 일반사항	성명	소속	
	직위	기관연락처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자 일반사항	신청자 성명		
	기관명		
	입소일 (위탁보호일)		
	퇴소일 (위탁종료일)		
위와 같이 _____ 이(가) 보호종결아동임을 확인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기관명 : _____ (직인)			

발행번호 : _____

퇴소사실증명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원 기간	_____ - _____	성 별	_____
사용 용도	재출용		
제 출 처	_____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주 소 :	_____
기 관 명 :	_____
대 표 자 :	_____ 인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등 정보 확인
(입사당시 만34세 이하 여부 확인)

* 관련 발급 기관 확인

취약계층 검토 방법(기타_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제12호. 기타 ▶ 카.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증빙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등(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청소년)

▶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정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쉼터에 입·퇴소한 자

청소년자립지원관 서비스 대상 확인증

성명		생년월일	(만세)
주소		이용기간	현재

위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의 사례관리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인명] [인명]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 이 확인증은 (기관계출용)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

* 이용기간 1년 이상 여부 확인

* 관련 발급 기관 확인

5

질문과 답변

49p

+ 질문과 답변 ----- 50p

+ 질문과 답변

1. 1년이상 장기실업자 서류로 실업급여수급상세내역서(고용지청직인)만 있습니다. 구직등록을 해야 실업급여가 나오며, 구직등록을 한지 3년이 넘어 기록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 실업급여수급상세내역서는 증빙으로 유효합니다.(실업급여수급상세내역서+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제출)

2. 근로자 중 퇴사자가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에는 아직 포함된 상태입니다.

▶ 퇴직한 근로자를 유급근로자명부에서 제외 및 관련 서류(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등)를 제출해주세요.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에 있는 유급근로자 인원이 실제 고용한 인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180일 미만으로 가입된 자의 경우 유급근로자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4. 유급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데 비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타 사업장 가입자로 고용보험조회가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함에도 고용보험이 다르게 나타날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명부로 고용보험 가입일자를 확인합니다.

5. 취약계층 근로자 퇴사 후 다른 취약계층을 고용하였습니다. 아직 180일이 되지 않았는데 유급근로자로 인정되나요?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합니다.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아닐 경우, 유급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질문과 답변

6. 지점 근로자 확인 관련

▶ 지점 근로자도 포함하여 확인합니다. 사회적기업 리스트에서 지점 사항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 이스토어36.5 → 우선구매실적/공공구매 → 우선구매 공지사항)

7.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의 검색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청일 당일 및 전일 포함한 검색기간 확인하여 유급근로자를 확인합니다.

8.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도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에 포함되나요?

▶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이 서비스 하는 대상이 취약계층인 것으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의 고용인원 및 취약계층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